

연구사업규정 [2010. 12. 1 규정 제130호]

일부개정 2013. 1. 25 규정 제146호(직제규정)
2014. 12. 17 규정 제150호(직제규정)
2015. 4. 7 규정 제152호(직제규정)
2017. 2. 27 규정 제159호(직제규정)
2023. 6. 1 규정 제186호(직제규정)
2025. 6. 30 규정 제209호(직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4조에 따른 연구원의 주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계획수립과 연구사업의 수행,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제2조(구분) 연구사업은 연구과제사업,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및 연구기반사업으로 구분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사업”은 연구원의 주요사업중 국가, 경기도 및 시·군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부대사업”은 연구과제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정책동향분석, 대외 연구교류, 연구홍보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연구지원사업”은 연구과제사업 또는 연구부대사업의 지원사업으로 전산지원, 정보자료 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연구기반사업”은 연구과제사업, 연구부대사업 또는 연구지원사업의 기반사업으로 연구사업기획, 연구사업평가, 연구인력지원, 인적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5. “연구사업지침”은 원장이 다음연도 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제시한 포괄적인 기본 방향을 말한다.
6. “예비사업계획”은 연구사업책임자가 다음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제2조의 연구사업 또는 세부사업별 사전에 작성한 연구사업계획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연구윤리) 제2조의 연구사업을 수행할 때 모든 직원은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연구사업책임자 지정) ①원장은 제2조의 연구사업 또는 세부사업별로 연구사업책임자를 지정한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연구사업지침의 작성) 연구기획실장은 다음 연도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지침을 수립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사업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4.12.17., 2017.2.27., 2023. 6. 1, 2025.6.30.)

제8조(예비사업계획의 작성) 연구사업책임자는 제7조에 따른 연구사업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사업의 예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4.12.17., 2017.2.27. 2023. 6. 1, 2025.6.30.)

제9조(연구사업계획의 작성) ①연구기획실장은 제출된 예비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경기도와 연구원의 정책방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연구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5., 2014.12.17., 2017.2.27., 2023.6.1., 2025.6.30.)

②연구기획실장은 연구사업책임자에게 예비사업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4.12.17., 2017.2.27., 2023. 6.1, 2025.6.30.)

제10조(연구사업계획의 승인) ①원장은 연구사업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사업계획의 변경은 원장이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사업의 수행

제11조(연구사업의 수행) ①연구사업은 연구사업책임자가 총괄하여 수행한다.

②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수행절차, 방법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연구사업의 보고) 연구사업책임자는 연구사업의 주요사항 및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위원회 운영) 정관 제29조에 의한 연구위원회는 연구사업의 기획, 지도, 평가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장 연구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14조(연구사업의 평가) ①원장은 연구사업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연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연구사업의 평가결과를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연구사업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연구사업의 관리) 원장은 연구사업의 결과와 관련된 정보자료, 간행물 등이 보존, 관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및 폐지) 이 규정 시행당시 「용역사업규정」은 이를 폐지하며, 재무회계규정중 제31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3. 1. 25)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7)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